

[문제] 지문 (가)를 참고하여 지문 (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문 (다)와 (라)의 문제에서 보이는 공통점을 찾아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1200자, 100점)

(가) 앤스로포모피즘(Anthropomorphism) 혹은 의인관(擬人觀)이란 동물이나 사물과 같은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인간의 정신적 특성을 부여하려는 입장을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유일무이한 주체로서 자아 이외의 객관적 세계는 자신의 의식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솔립시즘(Solipsism) 혹은 유아론(唯我論)적 경향을 지녀 왔기 때문에, 사나운 바람은 자연의 분노로 해석하고 상어 떼의 공격은 적대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런데 동물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종종 정반대의 실수를 한다. 인간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등한시하고 동물이 아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과소평가한다. 사람들에게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선택을 내리며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마찬가지로 동물도 똑같은 감정적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감정 표현을 숨기거나 비밀로 하지 않는다. 동물의 감정 세계는 매우 공개적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느끼는 바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우리가 동물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알 길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이 주장은 더 이상 과학적 자료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려는 입장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이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인간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상당 부분 인간의 감정과 사고의 특성에 기반을 두어 스스로를 다른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구분 지어 왔다. 그러나 동물의 감정을 부인하는 것은, 거의 매일 새롭게 나오고 있으며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확고하고 흥미진진한 과학적 연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포유류는 감정 처리에 중요한 뇌 구조가 인간과 동일하다. 흥미롭게도 동물원이나 서식지 침범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동물을 치료할 때 사람에게 적용하는 많은 심리 치료 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동일한 신경 구조 때문이다. 제임스 블라호스는 2008년 <뉴욕 타임스>에 게재한 글에서 학대, 공격성, 분리 불안, 우울증 그리고 강박 장애 같은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람에게 처방하는 약물이 동물에게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동물이 본질적으로 살과 피를 가졌지만 인간의 감정이나 기억, 의식과 같은 측면은 하나도 없는 자동 장치 같은 존재라는 기계론적인 데카르트적 관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서 동물이 사람에게 발병하는 것과 섬뜩할 정도로 비슷한 정신 질환을 겪는 것이며 똑같은 약물에 반응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동물이 감정적 존재인 것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동물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 감정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우리의 직관이 과학 연구에 의해 강력히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은 우리가 지금까지 감지해 오던 것을 이제야 따라잡고 있다.

(나) 우리 민법은 계약을 맺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한 가지는 자신의 의사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것을 의사 능력이라고 한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의사 능력이 없다.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사람 등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행위 능력으로, 스스로 효력 있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계약을 맺어 효력이 발생하고 지속된다면 우리는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라 칭하고 이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며, 만 19세 이상이

되었을 때 스스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법정 대리인은 누구일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 즉 부모님이다. 만약 부모님이 없는 경우이거나, 있더라도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된다. 후견인은 할머니, 삼촌, 고모 등의 친척이 될 수 있다. 그 외의 사람들도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법적으로 신고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 법은 미성년자가 혼자서 자유롭게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 우리 법은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 즉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있다. 어른들보다 사회 경험이 적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다.

(다) 전문가들은 친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은 자녀들은, 사실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살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용어 선택을 신중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가 상황을 비판해 자녀들까지 살해하는 사건들은 우리 나라와 동양권에서 많이 발생한다. 반면, 서구 사회의 경우 부부나 연인이 함께 자살하는 경우는 있지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죽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어린이가 자살했다기보다는 부모가 살해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부모가 자살할 때 자녀까지 함께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른바 ‘동반자살’로 표현된 일가족 사망 사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죽은 경우가 전체 사건의 절반이 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족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부모의 경우 30대가 55%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가 된 자녀는 10세 이하가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부모 없이 어린 자녀가 혼자 남았을 때 주변 이웃이나 복지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 즉 ‘불신이 크다’는 점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부모 자살 후 어린 자녀가 혼자 남는 것보다 함께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 가까이가 그렇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수 없다면 자녀도 부모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생각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자신이 낳은 자녀라도 죽이면 살인죄인데,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는 이를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며 동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족은 무조건 함께 해야 한다’는 잘못된 가족주의에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착각하는 그릇된 생각이 만연해 오히려 생명 경시 풍조를 양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 봐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런 가족 사망 사건을 대할 때마다, 처지를 비판해 자녀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극단의 선택을 하기보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되살릴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라) 반려인구가 1000만을 돌파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반려(伴侶)동물’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동물을 들일 때는 내 ‘가족’이지만 싫증이 나거나 배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 병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유기되는 동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유기동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기동물 수는 10만 마리를 넘어섰다. 이마저도 ‘구조된’ 수를 계산한 것으로 도심을 떠도는 유기동물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검역본부의 설명이다. 동물 유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의식과 관련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동물구조 119 대표는 “반려동물을 상품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단순히 귀엽다는 외향적인 호감으로 동물을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충동적으로 동물을 분양받지 말고 하나의 생명으로서 평생 책임질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있는 분만 입양하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점점 늘어가는 동물유기를 체감하는 곳은 비단 구조단체뿐만이 아니다.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해가 지날수록 구조돼 보호소로 이관되는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는 다행히 유기된 동물이 별로 없지만, 날이 풀리고 여름 휴가철과 추석 등 명절 기간이 지나면 동물유기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했다.